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라.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16조의2, 안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을 “기준” 이란”으로,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확보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

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1명 이상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둘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시설은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기자 서로 다른 경우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의3의 제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업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역량, 연구소 역량, 핵심 보유기술 역량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따른 지정예정 공고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할 것(단, 제16조의2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둔 경우 부소재지에도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계획 및 보고서, 연구노트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것

6.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이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이 계속하여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5호 및 6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3제1항”으로, “선정에 관한 사무”를 “지정 신청의 접수에 관한사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심사에 관한 사무

4의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 유효기간의 사전통지

4의4.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심사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14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확인 및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의6. 제16조의6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에 관한 업무

6.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1항제6호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활동 문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도 적용되며, 이 영 시행 이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연구인력 ----- ----- 기준” 이란 ----- ----- ---- 기준----- ----- ----- ----- ----- ----. <후단 삭제>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확보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		

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u>설립한 기업부설 연구</u> <u>기관: 2명 이상</u> <u>라) 「중견기업 성장촉진</u> <u>및 경쟁력 강화에 관</u> <u>한 특별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중견기업이</u> <u>설립한 기업부설 연구</u> <u>기관: 7명 이상</u> <u>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u> <u>구기관: 10명 이상</u> <u>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u> <u>: 1명 이상</u>
<u>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u> <u>기관: 5명 이상</u>	<u>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u> <u>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u> <u>설을 둘 것</u> <u><삭 제></u>
<u>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u> <u>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u> <u>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u> <u>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u>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u> <u>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u> <u>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u> <u>기관: 2명 이상</u>	
<u>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u> <u>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u>	<u><삭 제></u>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

<삭 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의 연구시설은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기차 서로 다른 경우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의3(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업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역량, 연구소 역량, 핵심 보유 기술 역량의 구분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정된 경우에는 우수 기업부설연 구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우수 기업연구소의 지 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의 3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 정의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 설>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
의3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
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따
른 지정예정 공고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핵심기술 기업부설연
구소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
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 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4. (생략)

<신설>

<신설>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 사항)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할 것(단, 제16조의2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둔 경우 부소재지에도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계획 및 보고서, 연구노트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것

6.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이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이 계속하여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5호 및 6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

-----.

1. ~ 3. (생략) 4. <u>제16조의3에 따른 우수 기업 부설연구소의 선정에 관한 사 무</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조의3제1항----- ----- 지정 신청의 접 수에 관한사무</u> 4의2. <u>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심사에 관한 사무</u> 4의3. <u>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 유효 기간의 사전통지</u> 4의4. <u>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심사 에 관한 사무</u> 4의5. <u>법 제14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확인 및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u> 4의6. <u>제16조의6 핵심기술 기업 부설연구소 지정에 관한 업무</u> 5. (현행과 같음) 6. <u>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 업부설연구소 등의 운영·관 리에 대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32